

상 벌 세 칙

2007년 1월 29일 제정 2009년 9월 9일 개정 2009년 12월 24일 개정 2011년 12월 13일 개정
2015년 12월 17일 개정 2019년 3월 13일 개정

행 안	개 정 안
제 1 장 총칙	
제1조 (목적) <p>세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위아지회(이하 "지회") 규칙 제48조(<u>표창</u>), 제49조(징계)에 의거하여 지회 발전과 지회의 단결 및 조합원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지대한 공로를 한 조합원 및 인사의 업적을 치하하고 조합 내 질서유지와 유대강화 및 기강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.</p>	제1조 (목적) <p>본 세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위아지회(이하 "지회") 규칙 제48조(<u>포상</u>), 제49조(징계)에 의거하여 지회 발전과 지회의 단결 및 조합원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지대한 공로를 한 조합원 및 인사의 업적을 치하하고 조합 내 질서유지와 유대강화 및 기강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.</p>
제2조 (적용범위) <p>본 세칙은 전 조합원에게 적용한다.</p>	
제 2 장 포상	
제3조 (포상의 종류) <p>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모범 조합원 <u>표창</u>2. 감사 <u>표창</u>3. 공로 <u>표창</u>	제3조 (포상의 종류) <p>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모범 조합원 <u>포상</u>2. 감사 <u>포상</u>3. 공로 <u>포상</u>
제4조 (포상의 기준) <p>포상의 기준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조합원으로서 선언, 강령, 규약, 규정,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며 동지애와 단결력으로 타의 모범이 된 자2. 지회운영상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3. 지회활동에 탁월한 창의력을 발휘하여 지회의 명예를 대내외적으로 드높인 자4. 지회 조직의 강화 및 발전에 헌신한 자5. 조합원 이외의 인사로서 조합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인사	

행 안	개 정 안
<p>제5조 (추천 및 결정)</p> <p>대상자 선정은 추천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, 집행위원회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</p> <p>제6조 (시상)</p> <p>포상자의 시상은 정기대의원회의, 정기총회 또는 조합 및 지회 행사시에 실시한다.</p>	
<h3>제 3 장 징계</h3> <p>제7조 (징계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 할 수 있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조합 및 지부, 지회의 선언, 강령, 규약, 규정, 규칙을 위반한 자 각종 결의사항을 위반했을 때 지회의 업무활동에 대하여 방해 행위를 하였을 때 지회의 분열을 꾀하거나 명예를 손상하는 등 반 조직적 행동을 하였을 때 고의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교부금 지출시 고의적으로 횡령 또는 유용 시 각종 징계는 지회장이 발의한다 <p>제8조 (징계의 종류)</p> <p>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고 : 경위서를 받고 구두 또는 서면 경고한다. 정권 : 권리행사를 일정 또는 무기한 인정하지 아니한다. 해임 : 조합에서 직위를 해임한다. 제명 : 조합에서 제명한다. <p>다만, 대의원이 2, 3, 4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당해 대의원이 소속한 선거구에서 별도로 대의원을 선출하여 대의원 회의에 임할 수 있다.</p>	

행 안	개 정 안
<p>제9조 (징계의 절차)</p> <p>절차는 상벌규정에 따른다.</p>	
제 4 장 부칙	
<p><u>제10조 (효력발생)</u></p> <p>본 세칙은 <u>운영위원회 통과 일로부터</u> 그 효력을 발생 한다.</p>	<p><u>제10조 (시행)</u></p> <p>본 세칙은 <u>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u></p>
<p>제11조 (제정 및 개정)</p> <p>본 세칙의 제정 및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</p>	
<p>제12조 (통상관례)</p> <p>본 세칙에 미비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, 지부 규칙과 통상관례에 <u>의한다.</u></p>	<p>제12조 (통상관례)</p> <p>본 세칙에 미비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, 지부 규칙과 통상관례에 <u>따른다.</u></p>